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99

발의연월일: 2021. 1. 27.

발 의 자:서정숙・김선교・박대수

이종성 · 김예지 · 추경호

김승수 • 황보승희 • 정경희

백종헌 · 김영식 · 윤두현

태영호 • 박형수 • 양금희

하영제 · 신원식 · 조태용

조명희 · 한무경 · 조수진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,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.

그러나, 현행법상 보호자가 자녀 또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영상속 관련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, CCTV 열람을 원하는 피해 보호자가 관련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고액의 비용을 부담케 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나친 비용 문제로 보호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자녀 또는 보호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관련된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모자이크 처리가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영상정보 가공에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법 미비를 보완할뿐더러, 점증하고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함(안 제15조의 5제1항)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어 관련된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영상정보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5(영상정보의 열람금지	제15조의5(영상정보의 열람금지
등)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	등) ①
설치・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	
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	
여서는 아니 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.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
	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등 범
	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어
	관련된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
	얻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영
	<u>상정보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</u>
<u>2</u> . ~ <u>4</u> . (생 략)	3 . \sim 5 . (현행 제 2 호부터 제 4
	호까지와 같음)
	工///17 E D/